

최근 족보에 나타난 여성지위의 분석적 연구

An Analysis of the Women's Status Shown in the Family Pedigrees Recently Published

순천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 박 옥 임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un Che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 Park, Ok-Im*

— 목 차 —	
I. 서 론	2) 부모-자녀간의 기록
II. 연구방법	3) 자녀간의 기록
1) 연구자료	4) 특기사항
2) 자료처리	IV. 요약
III. 분석 및 논의	참고문헌
1) 부부간의 기록	분석자료

= ABSTRACT =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aid that there will be a desirable household and social life analyzing the content in example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based on the family pedigrees published since 1980 year in Korea. 142 family pedigrees i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ational Central Library in Seoul and Cheon Il Library in Kwangju as study data were used. Characters of the analyzing subject were born since 1940 year, who are still in existence possib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 1) In the records of man and wife
 - (1) The case which man's name was registered in detail and wife's name was not registered is 62.0% and more than a half.
 - (2) The case which wife's schooling, career and occupation were not registered is 97.9%.
- 2) In the records of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1) The case which only parents were registered in the ancestors of maternal line is 76.7%.

(2) The case which foster sons were registered although there were daughters is 15.5%, which is remarkable portions.

3) In the records of the relation of children

(1) The case which the register orders were sons first and daughter later, not birth order is almost all 97.2% and the case which daughters were not registered is 2.1%.

(2) The case which the married daughters' names with sons-in-law were registered is 40.2%, whereas the case which only the names of sons-in-law were registered without daughters' names is 56.3% and more than a half.

(3) The case which grandsons in the daughter's line were not registered wholly contrary to grandsons is 57.0% and more than a half. Especially granddaughters in the daughter's line were registered only one case.

In the above analysis results of Korean family pedigrees, the distinction ciousness to the wife and daughters as female among family members has been deeply conventionalized institutionally or conceptually.

서 론

한국은 1960년대 이전까지만해도 농경사회적인 정체성이 강하여 사회변화 속도가 비교적 완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는 꾸준한 경제적인 근대화의 추진과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급변하는 산업사회로 들어서서 사회변화 속도가 어느 때보다도 빨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인 오늘날 한국은 지난 25년간의 급속한 공업화를 거당한 국가개발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세계의 새로운 산업국가로 도약함으로써 제3의 물결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대응해야 할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앨빈 토플러(Albin Toffler)의 지적이다.

따라서 21세기의 미래사회는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사회는 붕괴되고 탈핵일화, 탈

대량화 및 다양화가 진행됨으로써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가족제도에 있어서도 표준화된 가족구조가 서서히 퇴조하고 소멸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 될 것이며 그러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¹⁾. 또한 사회구성원인 남녀간에도 지금까지 분명한 노동분리현상과 성에 따른 역할분담이나 기능분리현상도 사라지게 되어 다가오는 사회에서는 양성평등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李揆行 1986, p33, p120). 그러나 한국의 가족제도는 아직도 전통적인 유교의 가족 윤리인 上下秩序 강조의 수직구조적인 특성을 띠고 있어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남녀차별 의식이나 습성등의 봉건적인 잔재가 뿌리깊이 남아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족에 대한 연구는 가족가치관과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문제등 광범위하

註 1) 李効再교수도 미래의 가족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李効再, 1984, p.42) 예를 들면, ①독신가정 ② 단일부모가족 ③ 무자녀 부부가족 ④ 자녀있는 핵가족 ⑤ 친정부모, 시부모를 모시는 3대가족(직계가족) ⑥ 同業에 종사하는 職緣공동체 ⑦ 상업과 주거를 같이하는 비혈연의 대가족 ⑧ 종교적, 정치적 이념을 같이한 생활공동체 가족등.

역사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다. 그렇지만 가족의 역사인 가계를 기록한 족보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법학등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가정학의 측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드문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사회의 변화속에서 가족구성원중 여성이 어떻게 차별되고 있는가를 족보를 통하여 연구해보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줄고인 「族譜에 나타난 女性地位에 관한 小考」(박옥임 1984, pp 113~118)에서 밝혔듯이 족보가 처음 출현하기 시작한 15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중엽까지는 비교적 여성이 평등하게 수록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씨족공동사업으로 편찬하게 되어 여성을 완전히 차별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간행되고 있는 족보²⁾를 여성지위의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 또한 평등해야 한다는 정신 아래 개인으로서의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인간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인적자원 제공자로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건전한 국가건설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간행되고 있는 족보의 기재사항을 내용 분석한 것이다.

1) 연구자료

연구자료는 순천대학교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광주일보사부설전일도서관등에 소장되어 있는 족보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족보중에서 1980년 이

후 발간된 것으로서 총 142종을 사용하였다 (부록 분석자료).

여기서 1980년도 이후 최근에 간행된 것만을 연구 자료로 삼은 것은 한국사회가 여러 분야에서 반봉건적인 요소를 탈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변화상이 족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분석대상 인물도 개인에 관한 인적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1940년 이후의 출생자들 즉, 현재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사람 또는 그렇지 못한 경우 현재의 가족들과 긴밀한 혈연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분석자료중에서 始刊 연도와 修譜관계에 대해서는 밝혀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밝혀 두었다.

2) 자료처리

자료의 분석은 Personal Computer 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III. 분석 및 논의

족보란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子孫에 이르기까지의 한 家門의 系譜를 말하는데 그 기록은 序와 跋³⁾, 記 또는 誌⁴⁾, 圖表⁵⁾, 編修者의 이름, 凡例⁶⁾, 系譜表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系譜表에 명시되어 있는 傳記事項에는 그 家門에 속한 개개인의 名(이름), 字, 號, 生卒年月日, 官職을 중심으로 한 履歷, 勳業, 德行, 墓의 소재지, 配偶者, 子女關係등의 내용이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은 그림1과 같이 가족관계의 구조라는 연구

註 2) 우리나라 족보 간행의 90% 이상을 출판하고 있는 回想社(대전)는 지난 30년 동안 128개 姓氏 900여 문중의 족보 3백만권을 발간하였다(광주일보 1986년 8월 3일 6면).

註 3) 序와 跋 : 序는 一家의 淵源, 來歷, 編成의 畧수등을 밝힌 것이고, 跋은 편찬경위를 序보다 자세히 밝힌 것이다.

註 4) 記 또는 誌 : 始祖나 中始祖의 傳說, 墓地, 祭文, 行狀言行錄, 年譜, 得姓事蹟, 鄉貫, 地名의 沿革, 分派의 내력을 기재한 것.

註 5) 圖表 : 始祖의 墳墓圖, 始祖發祥地에 관한 鄉里의 地圖, 宗祠의 略圖, 祖先의 畫像등.

註 6) 凡例 : 족보 기록에 있어서 일러두기

의 불을 정한 후 종교인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가족관계의 중추적인 3구조인 부부간, 부모-자녀간, 자녀간의 구조에 있어서 여성차별을 분석한 결과이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부부간의 기록에 있어서(그림1의 가)

- (1) 부인이름기재
- (2) 부인의 이력사항

2) 부모-자녀간의 기록에 있어서(그림1의 나)

- (1) 모계조상수록

(2) 양자

3) 자녀간의 기록에 있어서(그림1의 다)

- (1) 자녀기재순서
- (2) 출가한 딸의 이름기재
- (3) 외손기재
- (4) 향렬이름

1) 부부간의 기록

(1) 부인이름기재

우리 사회는 이름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命名社會이므로 족보에서의 남편이름은 본명이외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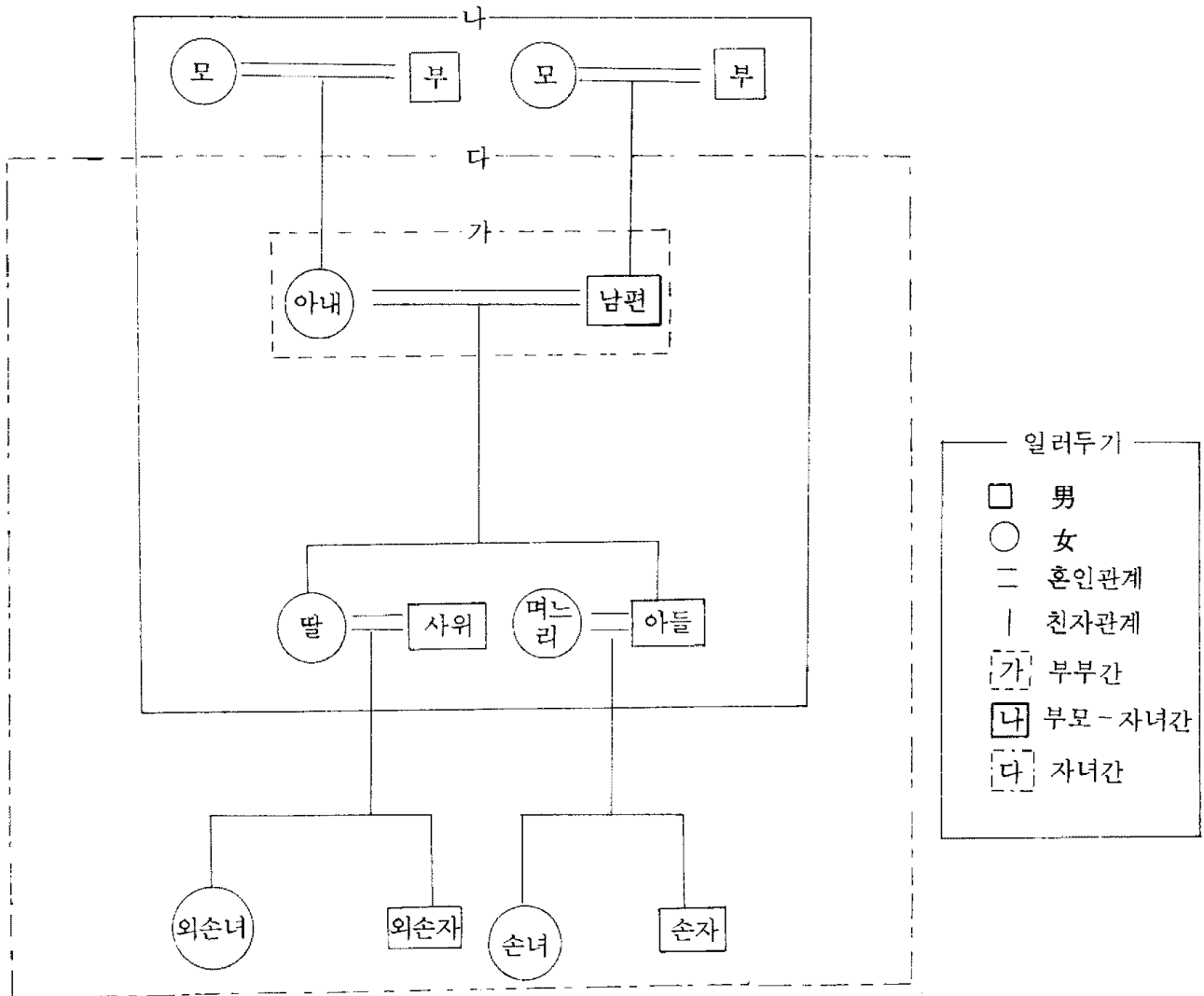


그림 1. 가족관계의 구조.

一名, 初名, 行名, 號까지 자세히 기재되고 있으나 부인의 이름은 기재되지 않고 있다. 표 1과같이 부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氏” 형태로 본관과 성씨만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62.0%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지만 부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경우는 불과 38.0%에 그쳤다.

더구나 이름을 밝혀주는 경우에 있어서도 구분을 쉽게 한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의 이름을 작은 활자로 적고 있으며 활자 크기가 같은 것은 유일하게 한 예(분석자료 83번)에 불과했다.

이처럼 한 가족내에서 부인의 지위가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등을 받고 있는 것은 남편만이 가계를 잇는 유일한 계승자 일뿐만 아니라 부인이 가정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남편이 수행하고 있는 대외적인 역할에 비해 낮게 평가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부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여성을 비교적 평등하게 대우했던 초기족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의 사회는 폐쇄적인 사회로서 여성이 內外法에 묶여 완전히 남편에 종속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개방된 사회로서 부부는 대등한 동반자로서 성에 의해 예속되지 않고, 지배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을 실체화시키는 부인의 이름을 밝혀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인을 남편과 대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가계계승을 위한 자녀출산도구로만 인식하던 과거의 봉건의

적이 아직도 가정생활에 존재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부인의 이력사항

조선후기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가정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절대금지 하였으며 사회 여건상으로도 불가능하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여러가지 제약은 받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표 2와 같이 부인의 학력, 직업등의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는 불과 2.1%에 그치고 있는 반면 남편과는 달리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97.9%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부인의 이력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현상은 과거 전통사회의 남편이 공직생활에 참여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그들의 이력사항은 기재되어 왔으나 부인의 對外活動은 제도적으로 봉쇄됨으로써 그들의 이력은 기재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부인의 대외활동으로 인한 이력사항까지도 계속 기재되어 오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남편의 이력사항을 범례의 원칙에 따라 登載官職이라하여 교수, 박사, 도의원 이상의 議員, 各級 학교장, 事務官, 기업체대표이사, 郡單位機關長, 삼군의 領官級 이상만 밝히고 있는데(분석자료 99 범례참조) 이러한 사례는 아직도 관준민비의 전근대적인 사고와 자기집안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연유된 것으로 매우 비

표 1. 부인이름기재

구 분		N		%
부인의 이름기재	동일 활자사용	1	54	38.0
	작은 활자사용	53		
부인의 본관만 기재		88		62.0
계		142		100.0

표 2. 부인의 이력사항

구 분	N	%
부인의 이력을 기재한 경우	3	2.1
부인의 이력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139	97.9
계	142	100.0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직업도 현대사회의 산업분화현상 및 교육과 사회진출의 기회확대에 따라 다양해지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여성의 이력사항도 기재해야 함은 물론 특정의 직급, 지위만을 기재함은 지양되어야 할 분세라 할 수 있다.

2) 부모-자녀간의 기록

(1) 모계조상수록

오늘날 한국의 가족제도는 농경위주의 사회에서 보편화 되었던 대가족제도가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핵가족제도로 변화하게 됨으로써 부모와 자녀중심의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자녀가 부모의 조상을 수록하는 경우 부계의 조상은 시조까지 거슬러 올라가 빠짐없이 밝혀주는 데 비해 모계의 조상은 극히 제한을 하여 밝히고 있다.

표3과 같이 모계의 조상을 밝히는 범위를 보면 모계의父만 밝혀주는 경우는 76.7%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모계의 父이상 조부나 증조부, 외조등을 밝혀주는 경우는 겨우 12.0%에 그치고 있으며, 전혀 밝혀주지 않는 경우도 11.3%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계의 조상을 밝혀주는 경우에도 모계의 부계만을 밝히고 모계의 모계는 전혀 밝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후기족보의 영향을 받은 최근 족보에 있어서 부계나 모계의 조상수록에 큰 차등을 두고 있지만 초기족보에 있어서는 八高祖圖, 內外譜 형식으로 명칭에 있어서도 母系 조상을 “外○○”로 붙이지 않고 부계

표 3. 모계 조상 수록

구 분	N	%
모계의 부만 수록	109	76.7
모계의 부이상 수록	17	12.0
모계를 전혀 수록하지 않은 경우	16	11.3
계	142	100.0

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으며 수록범위 또한 전혀 제한을 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오늘날 母系를 차별하는 것은 父系血統 繼續主義의 관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연유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가족의 규모는 핵가족으로 축소되었으나 이러한 변화와는 상관없이 족보가 문중이나 씨족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됨으로써 발생하는 역작용이라 생각된다.

(2) 양자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養親과 養子 本位의 사람을 위한 제도보다는 오히려 조상의 제사나 가계를 계승하는 家本位의 양자제도라 할 수 있다. 초기족보에서는 딸만 있으면 양자를 들이지 않았고 딸의 자손인 외손으로 하여금 後嗣를 삼았으며 아들이든 딸이든 소생이 없으면 굳이 양자를 들여 가계를 잇지 않고 “無後”로 기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양자제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후기족보에서는 친자관계인 딸은 물론이거니와 異姓不養이라하여 딸의 자손을 양자로 삼지 않았으며, 남편의 兄弟나 從兄弟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왔다.

표 4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 양자를 들이는 경우가 전체의 15.5% (22例)를 차지했는데 이러한 입양실태 중 자식이 없는 경우에 입양이 68.2%로 나타난것은 딸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실제로 딸이있는 경우에도 입양한 사례가 분석치 31.8% 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자제도는 딸로 하여금 家系를 이을 수 없는 폐쇄적인 남아선호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표 4. 양 자

구 분	N	%
딸이 있는 경우	7	31.8
자식이 없는 경우	15	68.2
계	22	100.0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혈연자녀가 아닌 非親子로 하여금 가계를 계승시키는 모순으로 작용하며 국가적으로는 인구억제정책에 커다란 장애물로도 작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3) 자녀간의 기록

(1) 자녀기재순서

부부는 자녀출산을 통하여 단순한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혈연관계의 전형적인 가정을 이루게 된다.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性에 관계없이 대등한 인격체로 여겨 자녀가 知的, 社會的, 情緒的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자녀를 기재하는 순서에 있어서 本宗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이라든지 (분석자료 86 번) 또는 前例에 의해서라는 (분석자료 138 번) 이유로 표 5 와같이 아들을 먼저 올리고 딸을 나중에 올리는 先男後女의 기재 방식이 97.2%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출생순서대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는 불과 한 예인 (분석자료 24 번) 0.7%에 그치고 있으며, 더구나 딸을 기재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2.1%로 나타났다. 자녀를 기재하는 순서에 先男後女의 원칙으로 차별하였던 후기족보의 영향을 받은 최근 족보와는 달리 초기족보에서는 오히려 자녀를 出生序列의 원칙 즉, 연령순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오늘날의 가정에서 아들을 우위에 두고 있는 점은 결코 우리 고유 전통

의 유산이 아니고 도중에 변질되어 온 것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자녀의 사회화 과정의 1차적 집단인 가정에서 조차 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여성을 열등사하여 자녀의 잠재능력의 개발과 국가의 인적자원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출가한 딸의 이름 기재

여성을 비하하는 경향은 초기족보보다 후기족보에서 심화되는데 출가한 딸의 이름을 밝히는데 있어서도 부인이름기재 경우와 마찬가지로 딸의 이름이 아닌 사위의 이름 즉, “女○○○” 식으로 수록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왔다.

표 6과 같이 딸과 사위의 이름을 동시에 기재한 경우가 40.2%에 그치고 있는데 비해 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다만 “女○○○”, “孀○○○” 형태로 사위이름만을 기재한 경우가 56.3%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출가한 딸은 전혀 기재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3.5%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딸이 직접적인 혈연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 아들과의 차별대우는 물론이거니와 비혈연관계인 사위를 더 존중하여 기재하고 또는 딸을 「出嫁外人」이라하여 기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봉건적인 남존여비사상이 우리의 가정생활속에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외손기재

子孫의 수록범위에 있어서 친손과 외손이 초기

표 5. 자녀의 기재 순서

구 분	N	%
선 남 후 녀	138	97.2
출 생 순 위	1	0.7
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2.1
계	142	100.0

표 6. 출가한 딸의 이름 기재

구 분	N	%
딸과 사위이름 동시 기재	57	40.2
사위이름만 기재	80	56.3
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3.5
계	142	100.0

족보에서는 전혀 차별하지 않고 대등하게 기재된 바와 달리 후기족보에서는 수록범위를 축소시켜 외손녀는 예외없이 기재하지 않았다.

표7과 같이 외손을 기재하는 경우는 43.0%로 비교적 적은데 비하여 외손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57.0%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볼 때 친손은 빠짐없이 기재하는데 비해 외손에 대해서는 차별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외손의 기재 경우에도 구분을 쉽게 한다는 이유로(분석자료 66번) 활자의 크기를 작게하여 차별하고 있다. 더구나 같은 외손중에서도 외손녀에 대한 기재는 다만 한 예뿐으로(분석자료 24번)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친손과 외손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다같은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男系血統만을 중시하는 배타적인 本宗爲 主사고에서 기인된 것이라 여겨진다.

(4) 항렬이름

항렬이름은 같은 혈족인 兄弟, 從兄弟, 再從兄弟 등 동일세대를 표시하여 同年輩, 또는 卑屬, 尊屬

표 7. 외손기재

구 분	N	%
외손을 기재한 경우	61	43.0
외손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81	57.0
계	142	100.0

표 8. 항렬 이름

구 분	N	%
항렬이름으로 기재(본명도 표기)	109	76.8
본명만으로 기재	24	16.9
본명이 항렬과 동일한 경우	9	6.3
계	142	100.0

을 뚜렷이 구분하려는 취지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宗族의 질서유지나 종족 집단의 조직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잇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표 8과 같이 아들의 이름을 올리는데 있어서는 본명만을 그대로 족보에 기재하는 경우가 16.9%에 지나지 않으나 “一名〇〇”로 표기하여 본명을 부수적으로 기재하면서, 항렬이름을 기재하는 경우는 76.8%이었으며, 본명이 항렬과 동일하여 그대로 기재된 경우도 6.3%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족보에서 항렬이름에 따르는 경우가 83.1%나 되는 것은 아직도 과거사회에서 처럼 가족간의 일체감과 친족간의 결속을 다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문중의 연대의식이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자녀의 이름을 자을 경우에도 개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된 항렬이름에 얽매임으로써 다양화 되어가는 시대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역기능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 특기사항

최근 족보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족보기재의 방향정립에 도움이 되는 주목할만한 事例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들면 부인이나 딸에 대한 인적사항 즉,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 학력, 직업 등을 남편이나 아들과 차별없이 자세히 기록하고 한글로 기재하였으며, 세로쓰기가 아닌 가로쓰기를 시도한 족보가 있는가 하면(분석자료 64번) 부인이나 딸은 물론 외손녀까지도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등(분석자료 24번) 진보적인 족보도 있었다. 이와같이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족보의 수록범위가 派譜에서 분리된 系譜나 家乘으로 좁혀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분석자료 64번은 이름표기에 있어서도 전통사회의 통념을 깨고 變形名詞⁷⁾ 이론을(송병수, 1959, pp674-677. 李崇寧, 1961, pp211~261.) 적용하여 이름을 부르는 대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註 7) 쌍형명사의 例: 갑도리→갑돌아, 갑수니→갑순아, 기러기→기러아

기이한 형태의 족보가 현대사회의 가족구성 및 사회발전 추세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범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요 약

고도로 발달해 가는 산업사회에서 한국의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균등화나 자유로운 직업활동으로 과거 전통사회에 비해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받는 여성 차별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연구는 1980년 이후 한국에서 간행된 142종의 족보를 실제적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가족구성원인 여성의 지위를 중심으로 하여 비합리적인 사항을 알아 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부간의 기록에 있어서 :

먼저 부인의 이름수록에 있어서 부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본관만을 기재한 경우가 62.0%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부인의 이력사항의 기재에 있어서도 97.9%가 밝혀주지 않고 있어 남편을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비해 부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자녀간의 기록에 있어서 :

부계의 조상과 반대로 모계의 조상을 밝히는데 있어서 76.7%가 조상범위를 극히 제한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또 가계계승을 위해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非親子 관계인 양자를 들이는 경우가 15.5%로 나타나 조상수록범위나 가계계승에 있어서도 부인과 딸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의 기록에 있어서 :

자녀의 수록 순서는 출생순서가 아닌 先男後女로 기재한 경우가 97.2%의 절대적인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혼한 딸의 이름을 밝히는데 있어서도 비혈연관계인 사위이름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56.3%로 과반수가 넘고, 딸의 자녀인 외손

도 57.0%인 절반이상이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아들의 이름도 항렬이름만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83.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등한 자녀관계에서도 딸을 매우 차별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가족구조에 있어서 가부장적인 父系血統존중 사상과 여성인 아내와 딸에 대한 차별의식이 제도적으로나 관념적으로 가정생활속에 뿌리 깊어 잔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장 평등해야 할 가정에서조차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상과 같은 족보에서의 여성지위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는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가치관과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조사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본다.

REFERENCES

- 1) 박옥임 : 族譜에 나타난 女性地位에 관한 小考,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권 2호, 1984, pp115-118
- 2) 송병수 : 학교문법체계 확립을 위한 발표, 국어국문학 20호, 국어국문학회, 1959, pp674-677
- 3) 李揆行 : 엘빈 토플러의 한국인과 제 3의 물결, 한국경제신문사, 1986
- 4) 李崇寧 : 語幹變形說의 提起, 國語造語論攷, 乙酉文化社, 1961
- 5) 李効再 : 가족과사회, 경문사, 1984

<부록> 분석자료

- 1) 晋州姜氏叅判公派譜, 晋州姜氏叅判公派譜所, 回想社, 1982.
- 2) 晋州姜氏晋原君派世譜, (1915 <1982, 4修>)
- 3) 晋州姜氏世譜, 1984.
- 4) 晋州姜氏監役公派譜, 驪興齋, 湖南文化社, 1984.
- 5) 高氏長興伯派大同譜, 回想社, (1779 <1985, 5修>)
- 6) 善山郭氏世譜, 善山郭氏世譜所, 回想社,

- (? < 1980, 4修 >)
- 7) 安東權氏花川君派世譜, 安東權氏花川君派 宗中, 回想社, (1476 <1984, 7修 >)
 - 8) 幸州奇氏大同譜, 幸州奇氏大同譜所, 回想社, 1982.
 - 9) 廣州金氏世系譜, 廣州金氏大宗中, (1924 <1982, 3修 >)
 - 10) 金海金氏版圖判書公派世譜, 東洋史學會附設 韓國族譜圖書室, 1984.
 - 11) 慶州金氏家乘, 1985.
 - 12) 光山金氏文敏公派譜, 光山金氏文敏公派譜所, 回想社, (1677 <1985, 9修 >)
 - 13) 商山金氏三元帥派世譜, 商山金氏三元帥派世譜, 回想社, (1703 <1985, 7修 >)
 - 14) 金海金氏監務公派世譜, 金海金氏監務公派世譜編纂委員會, 湖南文化社, (1754 <1985, 4修 >).
 - 15) 全州金氏明川朝唐派譜, 東洋史研究會附設 韓國族譜圖書室, 文化印刷社, 1985.
 - 16) 金海金氏版圖判書公派世譜, 東洋史學會附 設 韓國族譜圖書室, 文化印刷社, (1754 <1985, 4修? >).
 - 17) 金海金氏璿源世譜, 東洋史學會附設韓國族譜圖書室, 文化印刷社, 1985.
 - 18) 金海金氏淡軒派族譜, 金海金氏總管公世孫淡軒公派譜所, 回想社, (1668 <1986, 7修 >).
 - 19) 清道金氏大同譜, 清道金氏大同譜編纂委員會, 回想社, (1747 <1985, 7修 >).
 - 20) 靈光金氏靈城派譜, 1980.
 - 21) 安東金氏世譜, 安東金氏 中央花樹會, 回想社, 1982.
 - 22) 公州金氏族譜, 公州金氏宗親會, 寶文社, 1985.
 - 23) 光山金氏錄事公派族譜, 大山齋, 韓成文化社, 1982.
 - 24) 金海金氏三賢派譜, 金海金氏三賢派柱虎門中, 全日出版局, 1981.
 - 25) 原州金氏大同譜, 原州金氏大同譜編纂委員會, 大耕出版社, 1982.
 - 26) 順天金氏世譜, (1884 <1983, 3修 >).
 - 27) 慶州金氏白村公派大同譜, 宗統訴訟推進委員會, 譜典文化社, (? <1983, 4修 >).
 - 28) 金海金氏侍中公派大同譜, 金海金氏侍中公派大同譜所, 朗州印刷社, 1983.
 - 29) 金海金氏三賢派湖南大同譜, 金海金氏三賢派湖南大同譜編纂委員會, 譜典文化社, 1984.
 - 30) 順天金氏大同譜, 順天金氏大同譜編纂委員會, 農經出版社, (1764 <1984, 5修 >).
 - 31) 光山金氏良簡公派譜, 光山金氏良簡公派譜所, 回想社, (1677 <1984, 8修 >).
 - 32) 金海金氏版圖判書公派世譜, 東洋史學會附設 韓國族譜圖書室, 文化印刷社, 1985.
 - 33) 金海金氏金寧君派橫城系世譜, 東洋史學會附設 韓國族譜圖書室, 文化印刷社, 1985.
 - 34) 羅州羅氏大同譜, 羅州羅氏大同譜所, 回想社, (1721 <1984, 5修 >).
 - 35) 廣州董氏大同譜, 廣州董氏中央宗親會, 回想社, (1640 <1986, 7修 >).
 - 36) 馬氏大宗譜, 馬氏大宗譜編纂委員會, 回想社, (1644 <1981, 9修 >).
 - 37) 西蜀(延安)明氏大同譜, 回想社, (1701 <1986, 7修 >).
 - 38) 副護軍公派咸平牟氏世譜, 慕先齋, 夫盛印刷社, 1983.
 - 39) 南平文氏世譜, 南平文氏順平君派譜所, 湖南文化社, 1980.
 - 40) 南平文氏大同譜, 長淵書院, (1668 <1982, 대동보로는 최초).
 - 41) 密陽朴氏糾正公派, 東洋史研究會 附設韓國族譜圖書室, 文化印刷社, (1682 <1985, ? >).
 - 42) 陰城朴氏世譜, 陰城朴氏宗親會, 回想社, (1577 <1984, 5修 >).
 - 43) 密陽朴氏清齋公派世譜, 密陽朴氏清齋公派大同譜所, 回想社, (1824 <1985, 7修 >).
 - 44) 咸陽朴氏五恨公派世譜, 問竹亭, 湖南文化社, (1789 <1984, 6修 >).
 - 45) 密城朴氏金山派(忍堂公)世譜, 東洋史學會附

- 設韓國族譜圖書室, 人譜社, 1984.
- 46) 密陽朴氏僉正公派譜, 譜典文化社, 1984.
- 47) 咸陽朴氏世譜, 著存齋, 夫盛出版社, (1678 <1985, 13修>).
- 48) 密陽朴氏貞惠公派譜, 回想社, (1687 <1985, 8修>).
- 49) 竹山朴氏忠質公派譜, 竹山朴氏忠質公派固城南海譜所, 回想社, 1985.
- 50) 順天朴氏主簿公派譜, 永思齋, 朗州印刷社, (1677 <1985, 4수?>).
- 51) 溫陽方氏大同譜, 溫陽方氏花樹會, 農經出版社, (1781 <1981, 6修>).
- 52) 慶州裴氏大同譜, 武烈書院, 朗州印刷社, (1951 <1985, 2修>).
- 53) 老隱公次孫派慶州分貫益城裴氏大同譜, 益城裴氏大同譜編纂委員會, 回想社, 1981.
- 54) 裴氏大同譜, 武烈書完, 朗州印刷社, (1678 <1986, 5修?>).
- 55) 白氏大同譜, 白氏大同譜編纂委員會, 農經出版社, (1857 <1982, 4修>).
- 56) 原州邊氏訓練公派世譜, 原州邊氏濟州道宗親會, 韓一印刷社, (1791 <1980, 5修>).
- 57) 長淵邊氏世譜, 長淵邊氏族譜編纂委員會, 朗州印刷社, (1795 <1984, 9修>).
- 58) 大丘徐氏四佳公派世譜, 大丘徐氏四佳公派世譜所, 譜典出版社, (1702 <1980, 8修>).
- 59) 達城徐氏監察公派世譜, (1765 <1983, ?>).
- 60) 達城徐氏監察公派世譜, (1765 <1985, ?>).
- 61) 利川徐氏監務公派大同譜行錄目錄, (1725 <1983, 8修>).
- 62) 密陽孫氏判典公派世譜, 東洋史學會附設韓國族譜圖書室, 東光印刷社, (1838 <1984, 5修>).
- 63) 密陽孫氏叅議公派族譜, 密陽孫氏叅議公派修譜所, 回想社, (1695 <1985, 4修?>).
- 64) 여산송씨원운공과장드리(長橋)계, 85가승보, 송병수, 문화인쇄사, 1985.
- 65) 恩津宋氏(松窓公)世譜, 恩津宋氏松窓公派世譜刊行會, 譜典出版社, 1982.
- 66) 新半宋氏族譜, (1721 <1984, 6修>).
- 67) 高靈申氏豆原派世譜, 明承齋, (1638 <1984, 3修>).
- 68) 高靈申氏世譜, 永思齋, 湖南印刷社, (1578 <1986, 8修>).
- 69) 高靈申氏靜急公派譜, 回想社, 1985.
- 70) 青松沈氏遁齋公派世譜, 良溪祠講室, 朗州印刷社, (1545 <1984, 11修>).
- 71) 順興安氏叅判公派世譜, 叅判公齋室重建推進委員會, 三寶文化社, 1981.
- 72) 濟州梁氏叅議公派譜, 叅議公派譜編纂委員會, 湖南文化社, (1684 <1984, 8修?>).
- 73) 谷山延氏大同譜, 谷山延氏大同譜所, 回想社, (1687 <1984, 7修>).
- 74) 樂安吳氏族譜, 樂安吳氏族譜編纂委員會, 湖南文化社, (1817 <1985, 7修>).
- 75) 海州吳氏侍中公派靈巖世譜, 海州吳氏侍中公派靈巖世譜刊行委員會, 湖南文化社, 1982.
- 76) 海州吳氏大同譜, 湖南文化社, 1982.
- 77) 原州元氏世譜, 原州元氏大同譜所, 回想社, (1666 <1986, 7修>).
- 78) 杞溪俞氏軍器寺公派譜, 咸平宗中, 湖南文化社, (1645 <1980, 10修>).
- 79) 晉州柳氏文貞公派世譜, (1664 <1980, 4修>).
- 80) 漆原尹氏大同譜, 漆原尹氏大同譜編纂委員會, 回想社, (1741 <1981, 4修>).
- 81) 叅奉公派坡平尹氏翰林公派譜, 林泉精舍, 湖南文化社, 1984.
- 82) 坡平尹氏太尉公派世譜, 坡平尹氏太尉公波譜編纂委員會, 回想社, (1875 <1985, 4修>).
- 83) 全州李氏完豐大君第二子襄度公派譜, 全州李氏完豐大君第二子襄度公派譜所, 回想社, (1740 <1984, 5修>).
- 84) 全州李氏海安君靖僖公派譜所, 回想社, 1985.
- 85) 星州李氏侍中公派世譜, 星州李氏侍中公派望月亭譜所, 回想社, 1985.
- 86) 興陽李氏世譜, 興陽李氏世譜編纂委員會, 郎州出版社, 1980.

- 87) 全卅李氏茂山君派譜, 全卅李氏茂山君派宗中, 回想社, 1980
- 88) 永川李氏南谷公派譜, 永川李氏南谷公派譜所, 回想社, (1746 < 1981, 8修 >).
- 89) 慶卅李氏小卿公派譜, 慶卅李氏小卿公派譜刊行所, 榮進印刷社, 1981
- 90) 慶卅李氏益齋公派世譜, 慶卅李氏益齋公譜世譜刊行委員會, 和珍印刷社, (1748 < 1983, 4修 >).
- 91) 慶卅李氏左議政公派譜, 慶卅李氏左議政公派譜編纂委員會, 回想社, (? < 1982, 7修 >).
- 92) 咸平李氏彞判公派譜, 敦睦齋, 湖南文化社, (1955 < 1983, 3修 >).
- 93) 載寧李氏族譜, 載寧李氏司義公派譜所, 回想社, 1983
- 94) 延安李氏青蓮公派譜, 白雲莊旅館, 郎卅印刷社, (1807 < 1983, 4修 >).
- 95) 全卅李氏臨瀛大君貞簡公派世譜, 1984
- 96) 全卅李氏益安大君派大同譜, 全卅李氏益安大君派大同譜編纂委員會, 回想社, (1798 < 1984, 9修 >).
- 97) 牙山李氏大同譜, 牙山李氏大同譜所, 回想社, (1680? < 1984, 7修 >).
- 98) 全卅李氏家乘譜, 懷安大君派家乘譜所, 回想社, 1984
- 99) 陽城李氏世譜, 陽城李氏大宗會, 回想社, (1719 < 1984, 9修 >).
- 100) 公卅李氏文成公派世譜, 全卅李氏襄度公派大同譜所, 回想社, 1984
- 101) 全卅李氏茂林君派譜, 全卅李氏茂林君派譜所, 回想社, (1825 < 1985, 5修 >).
- 102) 公卅李氏文成公派世譜, 李鎭, 回想社, 1985
- 103) 全卅李氏守道君派世譜, 璿原守道君派世譜編纂委員會, 回想社, (1864 < 1985, 4修 >).
- 104) 泗川李氏彞奉公·彞判公派世系譜, 泗川李氏彞奉公·彞判公派譜所, 回想社, 1986
- 105) 星卅李氏文烈公派世譜, 東洋史學會附設韓國族譜圖書室, 文化印刷社, 1985
- 106) 羅卅林氏水公派世譜, 羅卅林氏水公派譜所, 大都印刷社, (1583 < 1984, ? >).
- 107) 扶安林氏大同譜, 扶安林氏大同譜編纂委員會, 回想社, (1955 < 1985, 2修 >).
- 108) 沃野林氏世譜, 1980
- 109) 羅卅林氏長水公派世譜, 羅卅林氏長水公派譜所, 湖南文化社, 1980
- 110) 丹陽張氏司憲公派世譜, 丹陽張氏司憲公派譜所, 回想社, (? < 1986, 중간사만 밝힘 >).
- 111) 木川張氏世譜, 旌忠祠, 三聖社, (1900 < 1982, 4修 >).
- 112) 二司長氏世譜, 回想社, 1983.
- 113) 丹陽張氏司憲公派世譜, 丹陽張氏司憲公派譜所, 回想社, 1986.
- 114) 東萊鄭氏靖節公四孫進士公派譜, 東洋史學會附設韓國族譜圖書室, 東光印刷社, (1584 < 1984, 7修 >).
- 115) 海州鄭氏大同譜, 海州鄭氏大同譜編纂委員會, 回想社, (1694 < 1985, 5修? >).
- 116) 普州鄭氏司直公派譜, 百花亭, 朗州印刷社, (1675 < 1985, 8修 >).
- 117) 草溪鄭氏大司成派譜, 日新印刷社, (1661 < 1981, 6修 >).
- 118) 草溪鄭氏康申大譜, 草溪鄭氏修譜委員會, 農經出版社, 1982.
- 119) 奉化鄭氏大同譜, 奉化鄭氏大同譜所, 回想社, (1803 < 1983, 5修 >).
- 120) 普州鄭氏族譜, 普州鄭氏族譜編纂委員會, 回想社, (1767 < 1984, 6修 >).
- 121) 慶州鄭氏月城尉派世譜, 二千年史常勤編纂委員會, 回想社, 1985.
- 122) 慶州鄭氏文川公后參奉公派譜, 慶州鄭氏文川公派楊州宗親會, 回想社, 1985.
- 123) 河南程氏世譜, 정석환, 湖南文化社, 1983.
- 124) 玉川(淳昌)趙氏副正公派世譜, 玉川(淳昌)趙氏副正公派世譜所, 回想社, (1702 < 1985, 14修 >).
- 125) 咸安趙氏節度公派譜, 咸安趙氏節度公派譜所, 명성인쇄사, (1614 < 1980, 5修 >).

- 126) 陽川葛氏光陽公派譜, 嶺南齋, 朗州出版社, 1983.
- 127) 昌寧曹氏密直使公派世譜, (? <1982, 14 修 >).
- 128) 昌寧曹氏司正公派世譜, 孝敬齋, 夫盛印刷社, 1981.
- 129) 昌寧曹氏都承旨公派靈巖譜, 都承旨公派靈巖譜補纂委員會, 朗州印刷社, (1693 < 1984, 7 修 >).
- 130) 清州左氏世譜, 清州左氏宗親會, 大東原色印刷社, (1929 < 1982, 3 修 >).
- 131) 延安車氏剛烈公后孝坪派譜, 車柱福, 回想社, (1646 ? < 1985, 8 修 >).
- 132) 潁陽千氏大同譜, 潁陽千氏中央宗親會, (1871 < 1981, 6 修 >).
- 133) 江華崔氏世譜, 江華崔氏世譜所, 朗州印刷社, (1641 < 1982, 10 修 >).
- 134) 慶州崔氏文密公派世譜, 慕山齋會議室, 朗州印刷社, (1641 < 1984, 9 修 >).
- 135) 普陽河氏大同譜, 普陽河氏大同譜編纂委員會, 回想社, (1606 < 1984, 7 修 >).
- 136) 陽川許氏世譜, 陽川許氏松禾寧越公派宗門會, 回想社, (< 1984, 2 修 ? >).
- 137) 南陽洪氏世譜, 南陽洪氏大宗中央宗會, 陽東社, 1981.
- 138) 豐山洪氏大同譜, (南平公系) 豐山洪氏大同譜刊行委員會, 農經出版社, (1709 < 1985, 5 修 >).
- 139) 豐山洪氏大同譜(晚隱公系), 豐山洪氏大同譜刊行委員會, 農經出版社, (1709 < 1985, 5 修 >).
- 140) 保寧派長水黃氏胡安公派譜, 長水黃氏胡安公派譜編纂委員會, 回想社, 1982.
- 141) 平海黃氏世譜, 東洋史學會附設韓國族譜圖書室, 文化印刷社, (1770 < 1984, 重간용 >).
- 142) 昌原黃氏奉教公派世譜, 東洋史學附設韓國族譜圖書室, 大譜社, (1703 < 1984, 3 修 >).

